

공 시 송 달

- 재산압류 통지 -

- 공 고 기 간 : 2024. 7. 1. ~ 7. 15.
- 서류의 명칭 :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
- 압 류 일 자 : 2024. 5. 30.
- 공 고 내 용

채납자현황		서류의 명칭 및 내용	급수전 위치	채납 기간	채납액(원)				압류한 재산
주소	성명	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물이용 부담금	
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5*, 4**호 (일산동)	박*대	명 칭 :재산압류 통지	울산 동구 번덕2길 6*	2023.1.~ 2024.4.	2,048,400	706,570	1,315,330	26,500	울산광역시 동구 학문로 3*~* (건물 및 토지)
		내 용 :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	울산 동구 대송로 5*	2023.10.~ 2024.3.	420,150	224,200	179,300	16,650	

위 재산압류 통지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(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41-1, ☎052-229-5724)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24. 7. 1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

